

**【붙임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 신·구 대비표**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현 행</b> (중소기업청 공고 2014-92호, 2014. 2. 28) <b>부 칙</b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개 정</b> (중소기업청 공고 2014-141호, 2014. 4. 3) <b>부 칙</b></p>
<p>1. 이 공고는 201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2. 유효기간 : 이 공고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은 2015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.</p> <p>3.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-205호(2013. 8. 30)는 이를 폐지한다.</p>	<p>1. 이 공고는 201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2. 유효기간 : 이 공고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은 2015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.</p> <p>3.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-92호(2014. 2. 28)는 이를 폐지한다.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<u>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</u></b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<u>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</u></b></p>
<p><b>1. 총 칙</b></p> <p>라. 기타의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별 법률과 이 총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”에 따른다.</li> <li>○ “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(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-10호)”의 제품별 특이사항은 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(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-92호)”의 제품별 특이사항에 따른다.</li> </ul> <p><b>Ⅰ.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: 202개 제품</b></p>	<p><b>1. 총 칙</b></p> <p>라. 기타의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별 법률과 이 총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”에 따른다.</li> <li>○ “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(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-16호)”의 제품별 특이사항은 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(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-141호)”의 제품별 특이사항에 따른다.</li> </ul> <p><b>Ⅰ.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: 201개 제품</b></p>

